

## 25.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(안) 입법예고

건설교통부공고제2000-30호 1999. 1. 29

### 개 정 이 유

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는 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공시하는 「건설업자의 시공능력」의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### 주 요 골 자

- 가. 건설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공능력 평가 항목중 공사실적 평가액을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70%에서 60%로 줄이고, 경영평가액을 실질자본금과 경영평점 등을 곱한 액수의 50%로 하던 것을 100%로 변경함.
- 나. 건설공사 실적의 연평균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환산기준을 현행 연단위에서 월단위로 변경함.
- 다.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던 자가 업종변경을 위하여 다른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 종전에 영위한 건설업의 공사실적이 새로이 등록한 건설업의 공사실적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합산할 수 있도록 함.
- 라. 시공능력 평가항목중의 하나인 경영평점의 평가항목에 성장성비율인 “매출액

증가율”을 추가하고 건설업계 평균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현재 산술평균비율에 의한 방식을 가중평균비율에 의한 방식으로 전환함.

- 마. 건설기술자 위장고용 등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능력의 평가액이 자본금의 2배 또는 실적평가액의 50%를 넘지 못하도록 함.
- 바. 종전에는 신인도 평가를 함에 있어 우수건설업자 또는 ISO인증을 하나만 받더라도 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4%를 가산하였으나 앞으로는 각각 2%만 가산하도록 하며, 신기술 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2%를 추가로 가산하도록 함.
- 사.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의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경영평점을 1로 함.
- 아. 자료의 제출 준비 등을 위해 개정된 평가방법은 2001년 공시부터 적용하되, 공사실적의 연평균 산정시 월단위 환산기준은 2000년 공시부터 적용토록 함

주택회보